

# 漁船共濟解說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共濟部長 許 義 紹

## 1. 정의

본회의 어선공체는 공체계약자로 부터 공체료를 받고 공체목적소유자인 피공체자의 어선이 일정기간내에 해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공체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어선이라 함은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획물의 보장 또는 제조설비를 갖춘선박, 어장 및 수산물 제조가공 장소로 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선박,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및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어업용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본회 또는 회원조합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등을 말하고, 해상사고라 함은 어선이 해상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와 화재, 멸실, 손상, 구조등에 의한 사고로써 입거나 또는 상가중에 생긴사고를 포함 합니다.

## 2. 공체 목적의 범위

공체의 목적이 될 어선의 범위는 선체, 기관 및 의장품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선이 다음자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체의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즉, 선체의 중요철도가 불균형하거나 마력이 과다할때, 복원력 및 강력이 부족할때, 어선(선체, 기관 및 의장품)이 현저하게 노후 되었거나 중대한 흠이 있을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될 상황하에 있을때 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약관이나 규약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어선으로써 갖추어 져야

할 조건이나 가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정하여 진것 입니다만, 본회 어선공체에 있어서는 어선점사에 합격하여 점사기간이 유효한 선박은 이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체목적물인 어선의 실제조사를 생략하고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조선(특강선포함)은 진수 후 15년, 강선은 진수후 25년, 경합금제, 강화초자, 프라스틱 및 세멘트로 제작된 어선은 진수 후 20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합에 설립된 공체평가위원회의 선령인하 결의를 득한 경우 및 감정규정에 의한 선령연장평가시에는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공체료의 산정은 공부상의 선령을 기준 합니다.

## 3. 공체계약의 체결

공체계약의 체결단위는 어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으로 하고 있으나, 체결단위중 그 일부만을 따로 공체가입 할수가 없으며, 선체와 기관 또는 선체와 기관 및 의장품을 동시에 단일공체금액으로 하여 가입하되 체결단위별 공체금액(가입액)은 각자의 공체가액(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당시 공체가액에 산정되지 아니한 체결단위는 가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공체를 가입 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금액은 5만원이며 최고한도액은 공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차와 본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체가액은 본회가 정한 일정기준의 평가표에 의거 산정한후 가입자와 협정하는 형식으로써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공체기간중 이를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체사고가 발생 하기전에 가입자가 협의하게 부당함을 증명하거나 본회가 계약당시보다 협의하게 증감되었다고 인정 할때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공체기간은 통상 1년 이지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1월 이상 1년까지로 할 수 있으며, 공체기간의 시기는 공체계약 성립일의 오후 4시로하고 그 종기는 당해 공체기간이 만료하는 날 오후 4시로 합니다.

계약의 체결절차는 어선공체에 가입교자 하는 자가 어선공체계약청약서에 공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예수금)과 어선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본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청약의 승낙여부를 30일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며, 만약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수금을 환급하여 드리나, 승낙시에는 증권의 교부로써 갈음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 때부터 자동승낙하게 되며 공체계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예수금을 수령한 날로 소급하여 공체료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공체계약은 그 청약의 날에 성립하고 그 성립일의 오후 4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체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분할납입이 가능하므로 분할납입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체료분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체목적에 질권, 저당권 또는 배도(양도)담보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공체금담보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정시는 반드시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공체목적소유자(피공체자)와 계약자가 상이 할 때에는 피공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청약서의 심사를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자가 본회에 알려야 할 사항

계약당시 본회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외에 다른 공체계약 또는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그 사항 및 본회의 위험축정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등이며, 공체계약기간 중에 본회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는 총톤수 또는 선체의 중요도에 변경을 가져오는 개조

를 하고자 할때, 기관의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때, 의장품의 변경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때, 어선의 종류 또는 조업구역과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 소속조합 또는 선명을 변경하고자 할때, 공체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공체자와 공체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공체사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때, 어선을 해체하고자 할때, 그외에 공체목적에 대하여 공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협의히 증언할 우려가 있을때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을시에는 사고전후에 불구하고 본회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5. 손해의 보상

공체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본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는 전손, 분손, 구조비로써 전손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전액을, 분손의 경우에는 선체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한하여 각각의 손해율이 100분의 15이상 일때 그 해당가입액에 그 손해율을 승한금액을 보상하며, 구조비는 공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때(특약의 경우에는 공체금과 동시지급)에 한하여 보상 합니다.

선체 및 기관이 전손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선이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손해로 인하여 원형으로 복구불능상태에 있을때, 원형복구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요소적 부분에 손해가 있을 때, 손해 정도가 기술적으로 수리복구가 가능하나 구조비 또는 수선비등의 합산액이 공체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을때, 손해율이 100분의 75 이상 인때 등과 행방불명으로써 무동력선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동력선은 30일,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동력선은 60일, 총톤수 100톤이상의 동력선은 90일이 경과한 경우이며, 의장품의 전손처리는 인양여부에 불구하고 선체와 함께 침몰한때,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거나 그 연소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된때, 선박과 함께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손해로 인하여 원형으로 복구불능 상태에 있을때 등입니다.

분순시의 손해율은 매사고 발생시마다 체결 단위별로 산정하며 15%미만의 손해와 의장품의 분손사고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구조비는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어선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하였을 때에는 손해방지 및 경감에 노력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소요된 구조비를 공제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의 50%이내에서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구조비라 함은 어선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정박장소까지의 예인에 필요한 비용과 구조자에 대한 보수, 기타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한 필요비와 유익비 또는 손해(소송비용 및 자재비등을 포함함)를 말하고 구조에 종사하는 경우의 희망이익상실, 사고에 대한 구조에 출동 하였으나 구조불능의 비용, 선원 기타 인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어획물, 연료, 어구 기타 어선에 적재한 것을 방기함으로 인한 손해 등은 제외 됩니다.

## 6. 공제금의 지급청구

공제가입어선에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본회에 신고 하여야 하며 그후 자기의 비용으로 공제금지급청구서(소정양식)에 공제증권과 함께 조난사실증명(확인)서(소정양식),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난사실증명(확인)서는 사고발생지 또는 소속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대장, 해운항만청장포함) 또는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확인)서라야 합니다. 다만, 총톤수 5톤미만의 경우에는 조합장의 증명(확인)서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7.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고의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용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원인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지진·분화·방사능 및 원자력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 활증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당해위험사고, 타선박과 충돌하여 타선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사고(특약의 경우에는 제외)등과 공제금 지급신청판례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한 때, 공제사고로 인한 피해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공제사고 발생후 사고발생통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하여 피해상황의 측정이 곤란한 때, 공제사고 발생후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의무를 해태한 때, 어선의 용도이외에 운항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다만, 해난구조 및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에 종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본회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손해경감 및 방지의무를 해태한 때 등입니다.

또한 공제료 분납의 경우 그 납입응당일에 분납해당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가 된 경우와 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공제목적의 조사를 거부할 때, 사기의 행위가 있을 때 등으로 해지하게 될 경우 및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계약당시 공제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사고의 원인이 발생 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공제금액이 공제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공제계약이 무효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금은 지급되지 아니 합니다.